

의안
번호

385

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1. 10. 19.
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나. 의안번호 : 제385호

다. 제출일자 : 2021. 10. 05.

라. 회부일자 : 2021. 10. 08.

2. 제안이유

-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에 기여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 목적(안 제1조)
- 나. 아동 급식지원 대상, 방법, 신청 절차 등(안 제2조~제5조)
- 다. 아동급식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8조)
- 라.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)
- 마. 아동급식위원회(안 제10조~제17조)
- 바.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19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아동복지법」 제35조제4항
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 제36조제5항

나. 예산조치 : 조치 필요

다. 입법예고

- 기 간 : 2021. 10. 07. ~ 2021. 10. 13.
- 의 견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□ 제정취지 등

- 본 조례안은 「아동복지법」 제35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결식아동 급식 지원의 기준,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임.
- 「아동복지법」 제35조1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2)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, 이를 위한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따라서 아동급식지원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사료됨.

1) 「아동복지법」 제35조(건강한 심신의 보존)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.

3.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

-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2) 「아동복지법」 시행령 제36조(급식지원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라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한다.
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- 제정안은 법 취지에 맞춰, 급식지원 대상자를 위한 지원 신청 및 절차와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,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아동급식 위원회 설치 운영과 급식업체에 대한 위생·안전교육 및 지도·감독에 대한 근거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.

〈 성북구 결식아동지원 현황〉

계	급식유형	단 체 급 식 소			꿈나무카드	도시락
		소 계	지역아동센터	공부방		
	1,496명	764명	763명	1명	627명	105명

□ 종합의견

- 본 제정안은 아동급식 사업과 관련하여 「아동복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보건복지부 아동복지 분야 사업 지침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아동급식 사업의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제정안은 적절하다 사료됨.